예 천 군

군 보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27호 2025. 6. 26.(목)

선람	기관의 장

조 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689호)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690호)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691호)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2692호)

규 칙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354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355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356호)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357호)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1358호)

훈 령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1호)

고 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80호)

회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9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5. 6. 30.>

예천군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71	396	16	109	39	211
정무직 계	1	1	–	–	–	–
군수	1	1	–	–	–	–
일반직 계	723	387	16	75	34	211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5급 내지 연구관	38	18	3	2	3	12
6급 이하	677	363	13	71	31	199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별정직 계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연구직 계	12	8	–	–	4	–
연구사	12	8	–	–	4	–
지도직 계	35	–	–	34	1	–
지도관	3	–	–	3	–	–
지도사	32	–	–	31	1	–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1명 ※ 변동없음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71	396	16	109	39	211	

나.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안)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일반직(안 별표3)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4	1	4	38	178	217	185	98	3
개정안	723	1	4	38	180	217	185	95	3
증 감	Δ1	-	-	-	+2	-	-	Δ3	-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연구직·지도직(안 별표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6	-	11	3	32
개정안	47	-	12	3	32
증 감	+1		+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0호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 1. 17.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경비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 교육 대상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 교육 내용

①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 성폭력 예방 교육

③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방법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1호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로 차등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중 “결손액”을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및 결손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등의 금지) 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결손액 청구 및 지급) ① 결손액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②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결손액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광역 무임승차 협약에 따라 발생한 운수사의 손실금은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운수사의 소속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결손액 지원 청구서

<table>
<tr><td rowspan="3">청 구 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사업체명</td><td colspan="2"></td><td>법인(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사업명칭</td><td colspan="6"></td></tr>
<tr><td>면허종류</td><td colspan="2"></td><td>면허일자</td><td></td><td>면허번호</td><td></td></tr>
<tr><td>사업목적
및 내용</td><td colspan="6"></td></tr>
<tr><td>청구사유</td><td colspan="6"></td></tr>
<tr><td>총결손액</td><td colspan="6">원</td></tr>
<tr><td>청구금액</td><td colspan="6">원</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7">「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결손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td></tr>
<tr><td>거래은행</td><td>은행명</td><td></td><td>예금주</td><td></td><td>계좌번호</td><td></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6">1. 운송수입금 결손액 산출내역</td></tr>
</table>

◇개정이유

○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료 이용 대상에 관한 조항 변경(안 제3조)

○ 예천군에서 면허를 득하여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무료화 대상을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 차등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

나.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 결손액 외 무료 운행에 따른 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다. 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결손액 산정 및 청구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

○ 결손액 산정 기준 : (당초) 최근 3년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 (변경)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 집계에 따른 산정

○ 결손액 청구 자격 : (당초) 운송사업자

→ (변경)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 제출서류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청구서

마. 결손액 지원에 관한 준용 조항 삭제(안 제8조)

바. 관련기관 ·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간 협약 체결 규정 마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92호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 17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예천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

정적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요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조리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산모나 출생아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등)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대상자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1. 청소년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

우는 제외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나 신생아

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10 이내 범위

2.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40 이내 범위

3. 예천군민 중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범위

4. 예천군민 중 제6조제2항제11호인 경우 : 전액(단, 이용료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 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의료기관

3.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상북도 소재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장 시 별지 제 3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천군 물품 관리조례」,「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비 고
금액	90만원	180만원	270만원	1주당 90만원씩 추가

※ 비고

1. 이용료는 산모나 산모와 영아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실 기본요금은 128,570원/1일로 한다. 다만, 총 이용금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2. 이용료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 일수는 14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쌍생아 등을 출산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아 한 명당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할 수 있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

감면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 생 아	성명		성별	
	분만 산부인과			
	소 재 지		출생일자	
감면대상종류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 . . 부터 . . . 까지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제정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과 기능(제4조)

○ 요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 조리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그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제8조)

○ 기준 이용료 : 1주 90만원, 2주 180만원, 3주 270만원

○ 감면율 : 예천군 관내 40%, 경상북도 도내 10%, 취약계층 50%, 청소년 산모 100%

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 위탁 운영 기관

-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 및 의료기관
- 조리원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상북도 주민등록을 둔 자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상북도 소재 기관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라. 수탁 결정에 관한 사항(제10조)

○ 민간위탁 심의의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결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4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6. 30.>

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1	396	16	109	39	211
정무직 계			1	1	0	0	0	0
	정무직		1	1	0	0	0	0
일반직 계			723	387	16	75	34	211
	3급 소계		1	1	0	0	0	0
		3급	1	1	0	0	0	0
	4급 소계		4	3	0	1	0	0
		4급	1	1	0	0	0	0
		기술4급	1	0	0	1	0	0
		4급·기술4급	2	2	0	0	0	0
	5급 소계		38	18	3	2	3	12
		행정	6	5	1	0	0	0
		시설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2	2	0	0	0	0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시설	4	4	0	0	0	0
		행정·농업연구관	1	0	0	0	1	0
		행정·사회복지·농업	2	0	0	0	0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녹지	2	1	0	0	0	1
		행정·농업·시설	6	0	2	0	0	4
		행정·농업·수의	2	1	0	0	0	1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보건·시설	1	1	0	0	0	0
		행정·환경·시설	1	0	0	0	1	0
		행정·시설·방송통신	1	0	0	0	1	0
		행정·농업·보건·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0	0	0	0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6급 소계		180	102	2	14	9	53
		행정	29	23	2	0	4	0
		세무	2	2	0	0	0	0
		사회복지	3	2	0	0	0	1
		농업	3	3	0	0	0	0
		녹지	2	2	0	0	0	0
		보건진료	3	0	0	3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15	12	0	0	1	2
		운전	2	2	0	0	0	0
		행정·세무	3	2	0	0	0	1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7	6	0	0	0	1
		행정·공업	2	2	0	0	0	0
		행정·농업	5	3	0	0	0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보건	2	1	0	1	0	0
		행정·환경	1	1	0	0	0	0
		행정·시설	9	8	0	0	0	1
		행정·위생	4	3	0	0	1	0
		행정·운전	1	1	0	0	0	0
		행정·학예연구사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1	1	0	0	0	0
		농업·녹지	1	1	0	0	0	0
		농업·수의	2	2	0	0	0	0
		보건·간호	2	0	0	2	0	0
		공업·환경	2	2	0	0	0	0
		행정·세무·사회복지	2	0	0	0	0	2
		행정·세무·농업	21	1	0	0	0	20
		행정·세무·시설	1	1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	4	0	0	0	0	4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공업·방송통신	2	1	0	0	1	0
		행정·농업·녹지	3	1	0	0	0	2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8	1	0	0	0	7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	1	0	0	1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7	0	0	7	0	0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3	0	0	0	0	3
		행정·세무·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	2	0	0	0	0	2
		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방호·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1	0	0	0	1	0
		방호·운전·시설관리·사무운영	2	1	0	0	0	1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7급 소계		217	124	5	22	13	53
		행정	48	32	5	0	6	5
		세무	4	4	0	0	0	0
		전산	2	2	0	0	0	0
		사회복지	8	2	0	0	0	6
		공업	2	1	0	0	1	0
		농업	3	3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1	1	0	0	0	0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간호	4	0	0	0	0	4
		의료기술	1	0	0	1	0	0
		보건진료	4	0	0	4	0	0
		환경	1	1	0	0	0	0
		시설	22	18	0	0	3	1
		운전	7	7	0	0	0	0
		행정·세무	7	4	0	0	0	3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19	5	0	0	0	14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9	9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16	16	0	0	0	0
		행정·방재안전	1	1	0	0	0	0
		행정·위생	3	2	0	0	1	0
		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공업·환경	1	1	0	0	0	0
		공업·방송통신	1	1	0	0	0	0
		농업·녹지	2	2	0	0	0	0
		농업·수의	1	1	0	0	0	0
		보건·의료기술	2	1	0	1	0	0
		보건·간호	11	0	0	11	0	0
		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환경·시설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0	0	0	1	0
		행정·세무·농업	14	0	0	0	0	14
		행정·농업·녹지	4	1	0	0	0	3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1	1	0	0	0	0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환경·운전·전기운영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8급 소계		185	95	4	26	7	53
		행정	38	29	2	0	1	6
		세무	1	1	0	0	0	0
		사회복지	10	7	0	0	0	3
		공업	3	1	0	0	2	0
		농업	2	2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4	1	0	3	0	0
		간호	8	0	0	0	0	8
		보건진료	3	0	0	3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22	13	0	0	2	7
		방송통신	1	0	1	0	0	0
		운전	5	4	1	0	0	0
		시설관리	1	0	0	0	1	0
		기계운영	1	1	0	0	0	0
		행정·세무	6	1	0	0	0	5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9	3	0	0	0	6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21	6	0	0	0	15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7	5	0	0	1	1
		행정·방재안전	2	2	0	0	0	0
		행정·방호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2	2	0	0	0	0
		농업·녹지	3	3	0	0	0	0
		보건·간호	7	0	0	7	0	0
		보건·환경	1	1	0	0	0	0
		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기계운영·화공운영	1	1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환경·운전	2	2	0	0	0	0
		의료기술·간호	7	0	0	7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9급 소계		95	42	2	9	2	40
		행정	16	6	2	0	2	6
		사회복지	7	5	0	0	0	2
		농업	8	4	0	0	0	4
		보건	2	0	0	2	0	0
		환경	2	2	0	0	0	0
		시설	8	3	0	0	0	5
		방재안전	1	1	0	0	0	0
		운전	7	5	0	2	0	0
		행정·세무	15	3	0	0	0	12
		행정·사회복지	10	2	0	0	0	8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보건	1	0	0	1	0	0
		행정·환경	3	2	0	0	0	1
		행정·시설	6	4	0	0	0	2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녹지·시설	2	2	0	0	0	0
		보건·사회복지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3	2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연구직 계			12	8	0	0	4	0
	학예연구사		7	7	0	0	0	0
	기록연구사		1	1	0	0	0	0
	농업연구사		4	0	0	0	4	0
지도직 계			35	0	0	34	1	0
	농촌지도관		3	0	0	3	0	0
	농촌지도사		32	0	0	31	1	0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1명 ※ 변동없음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71	396	16	109	39	211	

나.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안)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일반직(안 별표)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4	1	4	38	178	217	185	98	3
개정안	723	1	4	38	180	217	185	95	3
증 감	Δ1	-	-	-	+2	-	-	Δ3	-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연구직·지도직(안 별표)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6	-	11	3	32
개정안	47	-	12	3	32
증 감	+1		+1		

○ 직급 상향 조정(안 별표)

- 행정 9급 2명 → 행정·위생 6급 2명

○ 복수정원 조정(안 별표)

- 행정·농업 7급 2명 → 행정·농업·녹지 7급 2명

- 행정·녹지 7급 1명 → **행정·녹지·시설 7급 1명**
- 행정 8급 1명 → **행정·전산 8급 1명**

○ **직렬 및 직급 현행화(안 별표)**

- 행정·시설 5급 1명 → **행정·환경·시설 5급 1명**
- 시설관리 7급 1명 → **시설관리 8급 1명**
- 행정 8급 1명 → **행정 7급 1명**
- 행정 9급 1명 → **학예연구사 1명**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6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 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15]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과학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전기		일반전기
	전자		전자
	금속		금속
	섬유		섬유
	화공		화공
	화학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산업곤충	농촌지도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원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	임업	전직류
	조경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공중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건축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도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농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업	녹지	전직류
		녹지연구	임업
			조경
	잠업	농업연구	산업곤충
	원예	농업연구	원예
	축산	농업	축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의	수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로
		해양수산연구	전직류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등을 위한 전출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 등을 위한 전출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33조)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타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나. 기술직렬 직군 명칭 변경(안 제19조, 별표 12, 별표 15, 별표 17)

○ 기술직공무원 → 과학기술직공무원

다. 용어 정비(안 별표 1)

○ 취업보호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안 별표 1)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7호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수령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환지청산금 지급 방법 정비(안 제8조제4항)**

- 인감증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환지청산 지급부에 수령자의 자필 서명 확인 규정 마련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8호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예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을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에 따른”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2

같은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td rowspan="4">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td><td>□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td><td rowspan="4">____점</td></tr>
<tr><td>□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td></tr>
<tr><td>□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table>
<tr><th>점수</th><th>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
</table></td></tr>
<tr><td>□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
<tr><td>④ D등급(4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td rowspan="4">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td><td>□ 운영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계획 수립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
<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
<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td></tr>
</table></td><td rowspan="4">____점</td></tr>
<tr><td>□ 직원 교육계획 수립(3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직원 교육계획 수립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td></tr>
<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미흡하게 수립</td></tr>
</table></td></tr>
<tr><td>□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미흡</td></tr>
</table></td></tr>
<tr><td>□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table>
<tr><th>구분</th><th>전수</th><th>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 rowspan="3">시설급여</td><td>2점</td><td>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td></tr>
<tr><td>1점</td><td>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td></tr>
<tr><td>0점</td><td>해당없음</td></tr>
<tr><td rowspan="3">재가급여</td><td>2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td></tr>
<tr><td>1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td></tr>
<tr><td>0점</td><td>1종 급여 제공</td></tr>
</table></td></tr>
<tr><td rowspan="2">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td><td>□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td></tr>
<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td></tr>
</table></td><td rowspan="2">____점</td></tr>
<tr><td>□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8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
<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
<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적정</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작성, 인건비 비율 미흡</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td>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td><td>☐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table>
<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
<tr><td>5점</td><td>충족</td><td>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td></tr>
<tr><td>0점</td><td>미충족</td><td>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td></tr>
</table>
☐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자체, 일부 위탁]
<table>
<tr><td>점수</td><td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
<tr><td>5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
<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
<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td><td>____점</td></tr>
<tr><td>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td><td>☐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3점)
<table>
<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
<tr><td>3점</td><td>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td></tr>
<tr><td>2점</td><td>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td></tr>
<tr><td>1점</td><td>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td></tr>
<tr><td>0점</td><td>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td></tr>
</table>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3점)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3점)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설비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2점)
☐ 동일 건물에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2점)
(해당하는 경우 0점, 해당없을 경우 2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td><td>____점</td></tr>
<tr><td>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td><td>☐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td><td>____점</td></tr>
<tr><td colspan="2">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td><td></td></tr>
</table>

2. 복지용구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
<td>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td>
<td>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 설치 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table>
<tr><th>점수</th><th>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
</table>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
<tr><td>④ D등급(4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r>
</table>
</td>
<td>____점</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td rowspan="3">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td><td>☐ 운영규정 계획 수립(10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규정・계획 수립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
<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
<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매우 미흡</td></tr>
</table></td><td rowspan="3">____점</td></tr>
<tr><td>☐ 직원 교육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직원 교육계획 수립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td></tr>
</table></td></tr>
<tr><td>☐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
<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
<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 수립</td></tr>
<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td></tr>
</table></td></tr>
<tr><td rowspan="2">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td><td>☐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정성(3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td><td rowspan="2">____점</td></tr>
<tr><td>☐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td></tr>
<tr><td>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td><td>☐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
<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
<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td></tr>
</table></td><td>____점</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td rowspan="2"></td><td>□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자체, 일부 위탁]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td></tr>
<tr><td>6점</td><td>우수</td><td>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절하게 마련</td></tr>
<tr><td>4점</td><td>보통</td><td>매뉴얼·용구·장비 마련</td></tr>
<tr><td>2점</td><td>미흡</td><td>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매뉴얼·용구·장비가 없음</td></tr>
</table>
[위탁]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8점</td><td>매우우수</td><td>위탁 증빙 서류 완벽히 구비</td></tr>
<tr><td>2점</td><td>미흡</td><td>위탁 증빙 서류 미흡</td></tr>
<tr><td>0점</td><td>매우미흡</td><td>위탁서류가 없음</td></tr>
</table></td><td rowspan="2"></td></tr>
<tr><td>□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① 복지용구 전시 체험 공간 확보,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구비
<table>
<tr><th>점수</th><th colspan="2">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h></tr>
<tr><td>4점</td><td>매우우수</td><td>①, ② 모두 충실하게 작성</td></tr>
<tr><td>3점</td><td>우수</td><td>①, ② 모두 충실하게 작성</td></tr>
<tr><td>2점</td><td>보통</td><td>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td></tr>
<tr><td>0점</td><td>미흡</td><td>①, ② 모두 매우 미흡</td></tr>
</table></td></tr>
<tr><td>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td><td>□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td><td>____점</td></tr>
<tr><td colspan="2">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td><td></td></tr>
</table>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
<td rowspan="4">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td>
<td>□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 적용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td>
<td rowspan="4">____점</td>
</tr>
<tr>
<td>□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td>
</tr>
<tr>
<td>□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15점)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표 >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 0점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td>
</tr>
<tr>
<td>□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휴업(2점)과 폐업(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th><th>점수</th></tr>
<tr><td></td><td>
<table>
<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
<tr><td>2점</td><td>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1점</td><td>휴업 이력이 2회 이거나, 휴업기가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
<tr><td>0점</td><td>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가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인 경우</td></tr>
</table>
② 폐업이력(3점)
<table>
<tr><td>점수</td><td>확인내용 및 판단기준</td></tr>
<tr><td>3점</td><td>폐업 이력 1회 이하</td></tr>
<tr><td>2점</td><td>폐업 이력 2회</td></tr>
<tr><td>0점</td><td>폐업 이력 3회 이상</td></tr>
</table>
</td><td></td></tr>
<tr><td rowspan="4">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td><td>□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 사업 및 운영계획서・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현판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td><td rowspan="4">____점</td></tr>
<tr><td>□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중 1개라도 미실시 한 경우 0점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관리사항 확인</td></tr>
<tr><td>□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① 수급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td></tr>
<tr><td>□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 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 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td></tr>
<tr><td></td><td>□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시설급여]</td><td></td></tr>
</table>

항목	세부 기준	점수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③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1점 ④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시군구에 제출 보고하고 있다: 1점 - 예결산 등 보고 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첨부여부 확인 ※ 단,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직원회의 안으로 확인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 하고 있다: 2점	____점
	□ 회계 및 재정 운영(8점)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③ 예결산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2점 - 장기요양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은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여부로 대체 확인 가능 ④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 재해예방(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 안전관리(2점)	

항목	세부 기준	점수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①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9점)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다: 1점 ② 표준계약의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2점 ③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____점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7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5. 설치 운영자 심층평가 (12점)	□ 행정처분 관련 사항(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____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4점) [기관 평가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 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기관 평가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 기타 기관 운영관련 사항(4점) ①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노력사항: 2점 ②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점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8.12.)에 따라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2019.12.)에 맞추어 장기요양기관 갱신 대상기관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장기요양기관 갱신 신청에 관한 근거 법령 반영(제1조,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서면심의 대체 규정 마련(제8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사항의 심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처리 기준 점수 하향 조정(제9조)

- (당초)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 80점 이상
  → (변경) 70점 이상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변경 및 갱신 심사기준표 추가(별표 1, 별표 2)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71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6. 30.>

예천군 본청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계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총 계	396	22	29	25	16	25	18	19	25	18	25	20	14	14	27	20	23	19	37
정무직 계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무직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직 계	387	22	27	25	16	18	18	19	25	18	25	20	14	14	27	20	23	19	37
3급 소계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급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급 소계	3	0	1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4급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급 · 기술4급	2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5급 소계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5	1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행정·사회복지	2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행정·공업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행정·시설	4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행정·농업·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행정·농업·수의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행정·보건·시설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6급 소계	102	7	6	6	6	6	5	5	8	5	6	5	4	4	6	5	7	4	7
행정	23	5	5	1	2	2	0	0	1	3	0	0	0	0	3	0	1	0	0
세무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	2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농업	3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녹지	2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환경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시설	12	0	0	0	0	0	0	0	3	0	0	0	0	2	2	2	1	2	0
운전	2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세무	2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전산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6	0	0	0	0	0	3	3	0	0	0	0	0	0	0	0	0	0	0
행정·공업	2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행정·농업	3	0	0	0	0	0	0	0	0	0	2	0	1	0	0	0	0	0	0
행정·보건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행정·시설	8	0	0	0	0	1	0	0	0	1	0	0	0	1	1	0	2	2	0
행정·위생	3	0	0	0	0	0	0	0	2	0	0	0	1	0	0	0	0	0	0
행정·운전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학예연구사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업·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농업·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농업·수의	2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공업·환경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행정·세무·농업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행정·세무·시설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 분	계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행정·전산·방송통신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행정·사회복지·보건	2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행정·농업·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행정·농업·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행정·녹지·시설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방호·운전·시설관리·사무운영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급 소계	124	7	7	9	5	7	3	4	12	7	10	6	3	4	10	6	9	6	9
행정	32	5	7	2	0	4	0	0	3	4	0	0	0	1	4	1	1	0	0
세무	4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산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	2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공업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농업	3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보건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환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시설	18	0	0	0	0	1	0	0	4	0	0	0	0	2	2	2	5	2	0
운전	7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5
행정·세무	4	0	0	3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전산	2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5	0	0	0	0	0	1	4	0	0	0	0	0	0	0	0	0	0	0
행정·공업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	9	0	0	0	0	0	0	0	0	0	7	0	2	0	0	0	0	0	0
행정·시설	16	1	0	0	0	1	0	0	2	1	0	0	0	0	3	1	3	4	0
행정·방재안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행정·위생	2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전산·방송통신	2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공업·환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공업·방송통신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업·수의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농업·녹지	2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보건·의료기술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행정·농업·시설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행정·녹지·시설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환경·운전·전기운영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8급 소계	95	6	11	6	2	3	5	6	4	4	5	5	3	3	7	5	4	5	11
행정	29	6	10	2	0	2	0	0	0	3	0	0	0	1	2	1	0	2	0
세무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	7	0	0	0	0	0	4	3	0	0	0	0	0	0	0	0	0	0	0
공업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구 분	계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농업	2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보건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환경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시설	13	0	0	0	0	0	0	0	1	0	0	0	0	2	4	2	2	2	0
운전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행정·세무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전산	2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3	0	0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0
행정·공업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	6	0	0	0	0	0	0	0	0	0	3	1	2	0	0	0	0	0	0
행정·환경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시설	5	0	0	0	0	0	0	0	2	0	0	0	0	0	1	0	2	0	0
행정·녹지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행정·방재안전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행정·방호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업·녹지	3	0	0	0	0	0	0	0	0	0	1	2	0	0	0	0	0	0	0
공업·시설	2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보건·환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행정·환경·운전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기계운영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계운영·화공운영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9급 소계	42	0	1	3	0	1	4	3	0	0	3	3	3	2	2	3	2	3	9
행정	6	0	1	0	0	0	0	0	0	0	0	1	1	0	1	1	1	0	0
사회복지	5	0	0	0	0	0	4	1	0	0	0	0	0	0	0	0	0	0	0
농업	4	0	0	0	0	0	0	0	0	0	2	0	2	0	0	0	0	0	0
환경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시설	3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0
방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방재안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운전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행정·세무	3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2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행정·환경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행정·시설	4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2	0
전산·방송통신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녹지·시설	2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경력관 나군 (농기계교육교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경력관 다군 (사진·영상촬영)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 분		계	기획예산실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직 계		8	0	1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학예연구사	7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연구사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업연구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도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촌지도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촌지도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표 3] <개정 2025. 6. 30.>

예천군 직속기관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계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비 고
총 계	109	74	35	
정무직 계	0	0	0	
일반직 계	75	74	1	
4급 소계	1	1	0	
기술4급	1	1	0	
5급 소계	2	2	0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0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1	0	
6급 소계	14	14	0	
보건진료	3	3	0	
행정·보건	1	1	0	
보건·간호	2	2	0	
행정·보건·간호	1	1	0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7	7	0	
7급 소계	22	22	0	
의료기술	1	1	0	
보건진료	4	4	0	
보건·의료기술	1	1	0	
보건·간호	11	11	0	
간호·보건진료	2	2	0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1	1	0	
8급 소계	26	26	0	
보건	3	3	0	
보건진료	3	3	0	
보건·간호	7	7	0	
간호·보건진료	1	1	0	
의료기술·간호	7	7	0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0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0	
9급 소계	9	9	0	
보건	2	2	0	
행정·보건	1	1	0	
보건·의료기술	3	3	0	
보건·사회복지	1	1	0	
위생	0	0	0	
운전	2	2	0	
전문경력관 소계	1	0	1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1	
별정직 계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연구직 계	0	0	0	
학예연구사	0	0	0	
기록연구사	0	0	0	
농업연구사	0	0	0	
지도직 계	34	0	34	
농촌지도관	3	0	3	
농촌지도사	31	0	31	

[별표4] 〈개정 2025. 6. 30.〉

예천군 사업소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계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비고
총 계			39	16	11	12	
정무직 계			0	0	0	0	
일반직 계			34	16	6	12	
	4급 소계		0	0	0	0	
	5급 소계		3	1	1	1	
		행정·환경·시설	1	0	0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0	0	
		행정·농업연구관	1	0	1	0	
	6급 소계		9	4	2	3	
		행정	4	2	1	1	
		시설	1	0	0	1	
		행정·위생	1	0	1	0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0	0	
		방호·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1	1	0	0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0	0	1	
	7급 소계		13	6	2	5	
		행정	6	3	1	2	
		공업	1	1	0	0	
		시설	3	0	1	2	
		행정·농업	0	0	0	0	
		행정·시설	0	0	0	0	
		행정·위생	1	1	0	0	
		환경·시설	1	0	0	1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8급 소계		7	3	1	3	
		행정	1	1	0	0	
		시설	2	0	0	2	
		행정·시설	1	0	0	1	
		공업	2	2	0	0	
		시설관리	1	0	1	0	
	9급 소계		2	2	0	0	
		행정	2	2	0	0	
	전문경력관 소계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연구직 계			4	0	4	0	
	학예연구사		0	0	0	0	
	기록연구사		0	0	0	0	
	농업연구사		4	0	4	0	
지도직 계			1	0	1	0	
	농촌지도관		0	0	0	0	
	농촌지도사		1	0	1	0	

[별표 5] <개정 2025. 6. 30.>

예천군 읍면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계	예천읍	호명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총 계			211	26	27	16	15	15	16	16	16	16	15	16	17
정무직 계	정무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일반직 계	일반직 계		211	26	27	16	15	15	16	16	16	16	15	16	17
	5급 소계		12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2	0	0	0	0	0	0	0	1	0	0	0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0	0	0	0	0	1	0	0	0	0	0	0
		행정·농업·녹지	1	0	0	0	1	0	0	0	0	0	0	0	0
		행정·농업·수의	1	0	0	0	0	0	0	0	0	0	0	1	0
		행정·농업·시설	4	1	0	1	0	1	0	0	0	1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0	0	0	0	0	1	0	0
		행정·농업·보건·시설	1	0	0	0	0	0	0	1	0	0	0	0	0
		행정·농업·환경·시설	1	0	1	0	0	0	0	0	0	0	0	0	0
	6급 소계		53	7	6	4	4	4	4	4	4	4	4	4	4
		사회복지	1	1	0	0	0	0	0	0	0	0	0	0	0
		시설	2	1	1	0	0	0	0	0	0	0	0	0	0
		행정·세무	1	1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	1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	2	1	0	0	0	0	0	0	0	0	0	1	0
		행정·시설	1	0	0	0	0	0	1	0	0	0	0	0	0
		행정·세무·사회복지	2	0	0	1	0	0	0	0	0	1	0	0	0
		행정·세무·농업	20	1	2	2	2	2	1	2	1	2	2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4	1	0	0	0	0	1	0	0	0	0	1	1
		행정·농업·녹지	2	0	0	1	1	0	0	0	0	0	0	0	0
		행정·농업·수의	2	1	0	0	0	0	0	0	0	0	0	0	1
		행정·농업·시설	7	0	0	0	0	1	1	1	1	1	1	1	0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3	0	0	0	1	1	0	0	1	0	0	0	0
		행정·세무·농업·환경	1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0	0	0	0	0	0	1	0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	2	0	1	0	0	0	0	0	0	0	1	0	0
		방호·운전·시설관리·사무운영	1	0	0	0	0	0	0	0	1	0	0	0	0

구 분			계	예천읍	호명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7급 소계		53	9	9	3	2	2	4	3	4	4	3	5	5
		행정	5	1	2	1	0	0	0	1	0	0	0	0	0
		사회복지	6	2	1	0	0	0	1	0	1	0	0	1	0
		간호	4	1	1	0	0	0	0	0	0	0	0	1	1
		시설	1	1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세무	3	1	1	0	0	0	0	0	0	0	1	0	0
		행정·사회복지	14	0	3	1	0	0	2	1	2	2	0	1	2
		행정·농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환경	1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세무·농업	14	2	0	1	0	1	1	1	1	2	2	2	1
		행정·농업·녹지	3	0	0	0	2	1	0	0	0	0	0	0	0
		행정·농업·수의	2	1	0	0	0	0	0	0	0	0	0	0	1
	8급 소계		53	5	5	5	5	5	4	5	4	4	3	3	5
		행정	6	1	0	1	1	1	0	0	1	0	0	0	1
		사회복지	3	0	1	0	0	0	0	1	0	0	1	0	0
		간호	8	0	0	1	1	1	1	1	1	1	1	0	0
		시설	7	0	1	1	0	0	1	1	0	1	0	1	1
		행정·세무	5	0	1	0	0	0	0	1	1	0	0	1	1
		행정·사회복지	6	1	0	0	1	1	1	0	0	1	0	0	1
		행정·농업	15	2	1	2	2	2	1	1	1	0	1	1	1
		행정·환경	1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시설	1	1	0	0	0	0	0	0	0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0	0	0	0	1	0	0	0
	9급 소계		40	4	6	3	3	3	3	3	3	3	4	3	2
		행정	6	1	0	1	0	0	1	1	0	1	1	0	0
		사회복지	2	1	0	1	0	0	0	0	0	0	0	0	0
		농업	4	0	1	0	0	0	0	1	0	1	0	0	1
		시설	5	1	1	0	1	1	0	0	0	0	1	0	0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행정·세무	12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8	0	0	0	1	1	1	0	2	0	1	2	0
		행정·시설	2	0	2	0	0	0	0	0	0	0	0	0	0
		행정·환경	1	0	1	0	0	0	0	0	0	0	0	0	0
		행정·세무·환경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정직 계	별정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구직 계	연구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학예연구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록연구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업연구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도직 계	지도직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촌지도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촌지도사		0	0	0	0	0	0	0	0	0	0	0	0	0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1명(변동없음)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71	396	16	109	39	211	

나.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안)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정무직・일반직(안 별표)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4	1	4	38	178	217	185	98	3
개정안	723	1	4	38	180	217	185	95	3
증 감	Δ1	-	-	-	+2	-	-	Δ3	-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연구직・지도직(안 별표)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6	-	11	3	32
개정안	47	-	12	3	32
증 감	+1		+1		

예천군 고시 제2025-80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내 업무용지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1] 참고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공공업무시설용지 업2-1, A = 28,855.6㎡

→ 공공업무시설용지 업2-1, A = 10,000㎡

→ 일반업무시설용지 업2-2, A = 18,855.6㎡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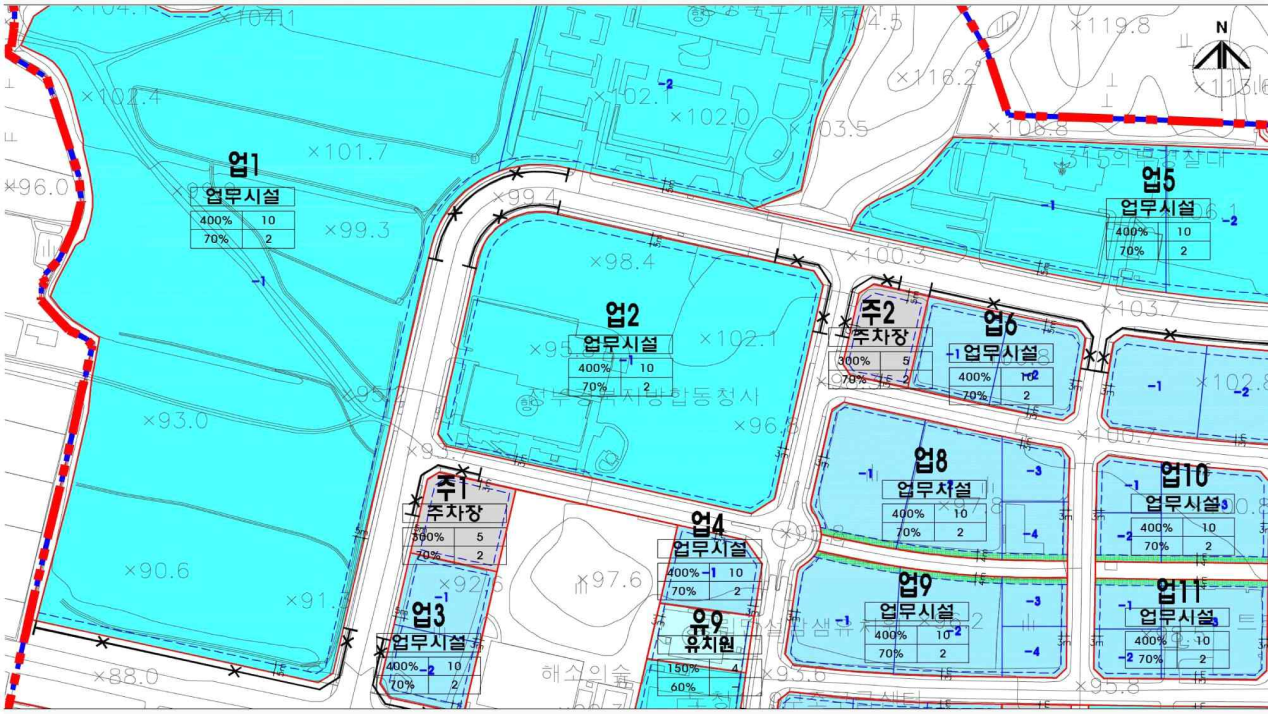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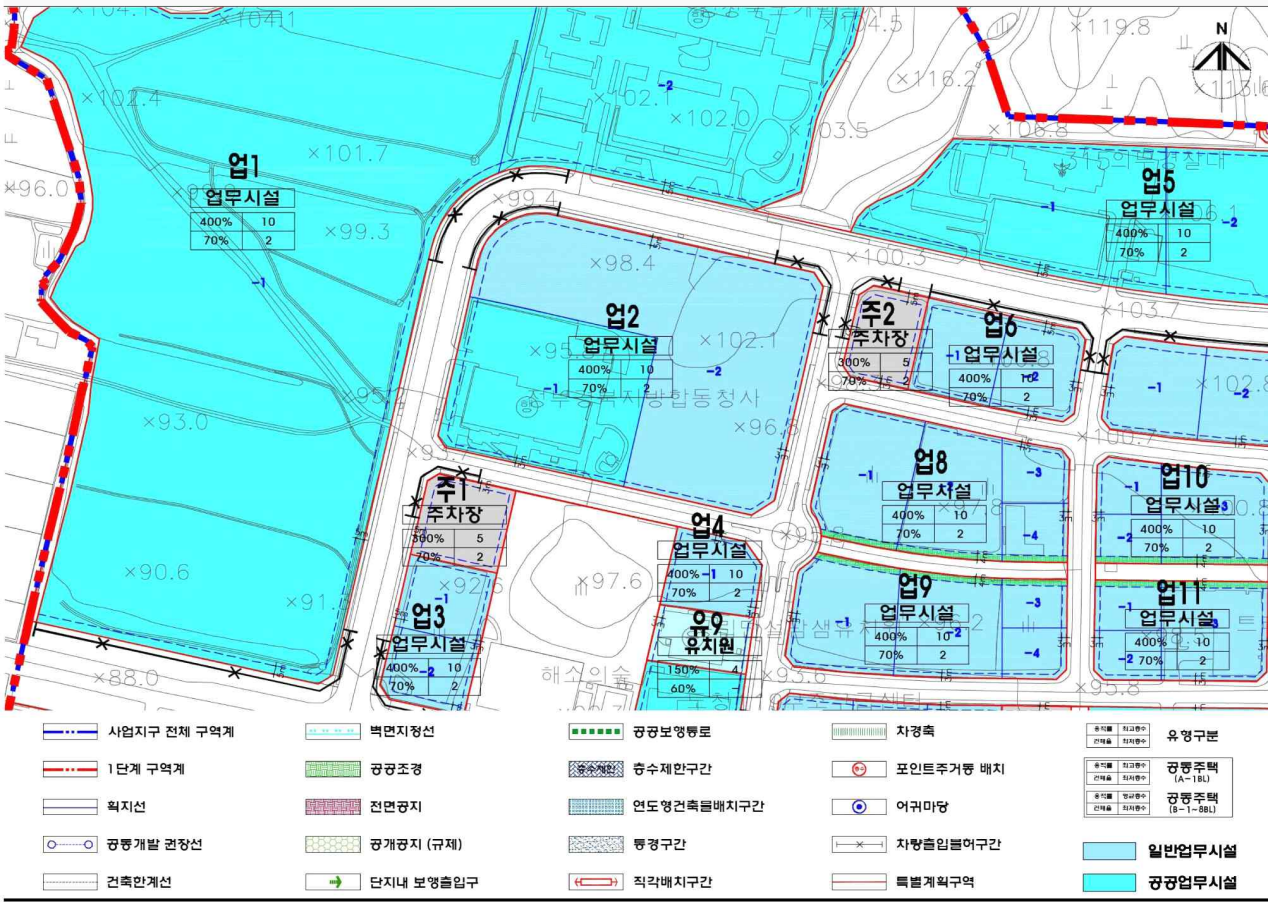

[별첨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호명읍 일원	2,082,054.8	-	2,082,054.8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2,054.8	-	2,082,054.8	100.00	
주거지역	소 계		1,189,686.6	-	1,189,686.6	57.14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721,143.9	-	721,143.9	34.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24.7	-	101,124.7	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131.3	-	246,131.3	11.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	373,887.9	17.96	
	준주거지역		468,542.7	-	468,542.7	22.5	
상업지역	소계		276,764.2	-	276,764.2	13.29	
	일반상업지역		176,097.6	-	176,097.6	8.46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4.83	
녹지지역	소계		615,604.0	-	615,604.0	29.5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15,604.0	-	615,604.0	29.5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	-	636,865.2	-	-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예천군 호명읍 일원	636,865.2	-	-	경고14-96 (2014.3.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85	19,444	475,300.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2	6,107	131,621.2
일반 도로	계	58	17,680	455,620.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4	5,937	130,604.4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9	6,232	181,744.6	-	-	-	3	2,413	73,722.40	6	3,819	108,022.2
	중로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자 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55	주간선도로	2,76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8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388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3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263	광로 2-1(예)	대로 3-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762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21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1	28	집산도로	843	광로 2-1(예)	대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4	28	보조간선도로	145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 2-2(예)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4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9	28	집산도로	69	광로2-1(예)	대로3-8	일반도로		예고24-137 (2024.11.7.)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298	광로 2-1(예)	대로 3-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2	21	집산도로	263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3	21	집산도로	281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3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2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401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8	21	집산도로	109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	16	국지도로	199	대로 3-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2	16	국지도로	690	중로 1-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3	16	국지도로	56	대로 3-1(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6	국지도로	135	중로 2-2(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5	16	국지도로	610	중로 1-2(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6	16	국지도로	58	대로 3-2(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8	16	국지도로	110	중로 2-5(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107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0	16	국지도로	106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1	15	특수도로	143	광로 2-1(예)	중로 2-9(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2	15	특수도로	90	중로 2-9(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3	15	특수도로	203	광로 2-1(예)	중로 2-10(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4	15	특수도로	105	중로 2-10(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176	중로 1-4(예)	중로 1-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47	광로 2-1(예)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3	대로 2-2(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769	대로 3-4(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2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54	소로 1-6(예)	소로 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6	소로 1-7(예)	소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5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6	중로 3-2(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70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36	소로 1-14(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89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3	소로 1-13(예)	소로 1-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1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41	소로 1-15(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58	소로 1-16(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01	대로 3-2(예)	경관녹지 2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44	중로 1-1(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00	중로 2-2(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50	광로 2-1(예)	중로 2-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65	대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4	중로 2-8(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55	중로 2-8(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52	중로 1-2(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광로 2-1(예)	중로 3-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37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0	10	특수도로	36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48	광로 2-1(예)	근린공원 2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2	10	특수도로	112	중로 1-6(예)	소로 1-49(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소로	1	33	10	특수도로	48	중로 2-13(예)	중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1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2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3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4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00	대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2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0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5	중로 3-2(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8	광로 2-1(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1	광로 2-1(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5	중로 1-4(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6	중로 1-2(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5	중로 3-1(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 대로3-9호선 : 1-문화공원(1,395㎡), 2-유수지(582㎡)와 중복결정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53.5	-	22,553.5		
기정	1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4	2,540.8	-	2,540.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51	2,171.8	-	2,171.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7	2,000.6	-	2,000.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8	2,868.6	-	2,868.6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77	1,396.7	-	1,396.7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3,248.5	-	3,24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25	2,396.4	-	2,396.4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65	1,947.4	-	1,947.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6	1,876.1	-	1,876.1	경고12-230 (2012.7.31)	
기정	10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6	2,106.6	-	2,106.6	경고12-230 (2012.7.31)	

나.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7.3	-	5,457.3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4	2,581.5	-	2,581.5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48	2,875.8	-	2,875.8	경고12-230 (2012.7.31)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6,851.7	-	406,851.7		
소 계					184,887.2	-	184,887.2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4	56,640.3	-	56,640.3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6	128,246.9	-	128,246.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50.9	-	750.9		
기정	1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96	750.9	-	750.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890.1	-	7,890.1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02	1,669.3	-	1,669.3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0	3,145.6	-	3,145.6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5	3,075.2	-	3,075.2	경고12-230 (2012.7.31)	
소 계					13,165.3	-	13,165.3		
기정	1	공원	체육공원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7	13,165.3	-	13,165.3	예천군고시 제2022-68호 (2022.7.18.)	
소 계					200,158.2	-	200,158.2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0 일원	46,241.2	-	46,241.2	-	도로 중복
기정	2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8 일원	28,317.0	-	28,317.0	-	도로 중복
기정	3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7 일원	46,522.7	-	46,522.7	-	도로 중복
기정	4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0 일원	67,533.2	-	67,533.2	-	
기정	5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49	5,238.4	-	5,238.4	-	
기정	6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48	6,305.7	-	6,305.7	-	

※ 지구내 면적 중 문화공원1,2,3은 도로(3,224.6㎡) 포함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758.5	-	114,758.5		
소 계					14,925.6	-	14,925.6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33	439.2	-	439.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41	571.2	-	571.2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6	1,073.4	-	1,073.4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8	927.9	-	927.9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6	3,254.4	-	3,25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7	1,900.1	-	1,900.1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8	2,741.9	-	2,741.9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20	4,017.5	-	4,017.5	경고12-230 (2012.7.31)	
소 계					99,832.9	-	99,832.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6 일원	46,959.0	-	46,959.0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1	35,605.0	-	35,605.0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1	5,091.6	-	5,091.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9	7,280.7	-	7,280.7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7	555.4	-	555.4	경고14-96 (2014.3.1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3	1,262.6	-	1,262.6	경고14-96 (2014.3.1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9	1,551.6	-	1,551.6	경고14-96 (2014.3.1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5	1,527.0	-	1,527.0	경고14-96 (2014.3.17)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7.4	-	257.4		
기정	1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32	64.2	-	64.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40	64.4	-	6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5	64.0	-	64.0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9	64.8	-	64.8	경고12-230 (2012.7.3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0	-	144.0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케이블헤드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6	144.0	-	144.0	경고14-96 (2014.3.17)	

2) 공동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공동구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	1.9	6,459.7	경고14-96 (2014.3.17)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58.5	-	40,858.5		
소 계					19,748.0	-	19,748.0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9	19,748.0	-	19,748.0	경고12-230 (2012.7.31)	
소 계					21,110.5	-	21,110.5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5	21,110.5	-	21,110.5	경고12-230 (2012.7.31)	

마. 방재시설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7	하천	지방 하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00 일원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855-28번지선 내성천(국가)합류점	7.262 (0.02)	25~110 (38)	435,240 (902.9)	경고09-483 (2009.11.5)	송평천

※ ( )는 사업지구내 포함부분임

2)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493.5	-	16,493.5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2	3,102.8	-	3,102.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2	13,390.7	-	13,390.7	경고12-230 (2012.7.31)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37.9	-	2,537.9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90	2,537.9	-	2,537.9	경고12-230 (2012.7.31)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8,897.2	160필지	48,897.2	
소 계		18,970.7	61필지	18,970.7	
D-1	1	4,151.6	1	299.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98.6	
			3	294.2	
			4	291.0	
			5	300.2	
			6	300.5	
			7	298.9	
			8	298.2	
			9	295.9	
			10	294.1	
			11	288.2	
			12	297.5	
			13	297.5	
			14	297.5	
	2	904.3	1	302.5	
			2	299.5	
			3	302.3	
	3	1,229.5	1	308.0	
			2	306.1	
			3	308.6	
			4	306.8	
	4	1,872.8	1	313.6	
			2	312.7	
			3	311.4	
			4	312.8	
			5	311.4	
			6	310.9	
	5	928.4	1	309.4	
			2	310.1	
			3	308.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1	6	973.8	1	324.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24.1	
			3	325.5	
	7	2,598.9	1	326.0	
			2	325.4	
			3	325.3	
			4	324.1	
			5	325.6	
			6	324.8	
			7	324.5	
			8	323.2	
	8	922.7	1	307.2	
			2	307.2	
			3	308.3	
	9	657.3	1	328.6	
			2	328.7	
	10	2,594.3	1	325.1	
			2	324.8	
			3	325.2	
			4	321.8	
			5	325.2	
			6	324.6	
			7	324.7	
			8	322.9	
	11	623.9	1	311.9	
			2	312.0	
	12	598.6	1	300.6	
			2	298.0	
	13	914.6	1	306.4	
			2	305.4	
			3	30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소 계		29,926.5	99필지	29,926.5	
D-2	1	3,118.6	1	310.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09.8	
			3	310.0	
			4	309.7	
			5	309.6	
			6	314.7	
			7	313.8	
			8	313.7	
			9	313.6	
			10	313.5	
	2	1,606.5	1	269.5	
			2	267.2	
			3	267.1	
			4	268.8	
			5	267.2	
			6	266.7	
	3	994.0	1	334.6	
			2	329.1	
			3	330.3	
	4	2,424.1	1	299.7	
			2	298.2	
			3	298.3	
			4	297.6	
			5	307.8	
			6	307.5	
			7	307.8	
			8	307.2	
	5	2,172.5	1	272.7	
			2	270.9	
			3	271.6	
			4	271.5	
			5	272.3	
			6	270.8	
			7	271.5	
			8	271.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6	1,338.2	1	267.7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67.7	
			3	267.9	
			4	268.1	
			5	266.8	
	7	1,795.6	1	302.1	
			2	301.6	
			3	296.0	
			4	300.2	
			5	300.8	
			6	294.9	
	8	920.0	1	306.1	
			2	306.0	
			3	307.9	
	9	2,596.5	1	325.9	
			2	324.2	
			3	324.5	
			4	325.5	
			5	325.2	
			6	323.4	
			7	323.4	
			8	324.4	
	10	2,345.6	1	289.6	
			2	287.3	
			3	287.2	
			4	287.3	
			5	300.3	
			6	298.2	
			7	298.3	
			8	297.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11	933.3	1	312.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11.6	
			3	309.5	
	12	621.1	1	311.3	
			2	309.8	
	13	2,596.4	1	326.1	
			2	324.3	
			3	324.4	
			4	325.4	
			5	324.7	
			6	323.3	
			7	323.5	
			8	324.7	
	14	2,564.5	1	319.1	
			2	317.4	
			3	317.4	
			4	317.5	
			5	324.4	
			6	323.1	
			7	322.6	
			8	323.0	
	15	1,787.4	1	298.0	
			2	297.4	
			3	298.0	
			4	298.2	
			5	298.5	
			6	297.3	
	16	1,488.0	1	298.9	
			2	298.1	
			3	298.3	
			4	298.3	
			5	294.4	
	17	624.2	1	311.6	
			2	312.6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table>
<tr><th rowspan="2">도면
번호</th><th rowspan="2">가구
번호</th><th rowspan="2">면적
(㎡)</th><th colspan="2">획지</th><th colspan="2" rowspan="2">비고</th></tr>
<tr><th>위치</th><th>면적(㎡)</th></tr>
<tr><td colspan="2">계</td><td>481,865.2</td><td>12필지</td><td>481,865.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B-1</td><td rowspan="3">-</td><td rowspan="3">82,137.3</td><td>1</td><td>38,905.1</td><td rowspan="5">제3종
일반
주거
지역</td><td rowspan="11">-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td></tr>
<tr><td>3</td><td>31,232.2</td></tr>
<tr><td>4</td><td>12,000.0</td></tr>
<tr><td rowspan="2">B-2</td><td rowspan="2">-</td><td rowspan="2">88,447.7</td><td>1</td><td>46,020.2</td></tr>
<tr><td>2</td><td>42,427.5</td></tr>
<tr><td>B-3</td><td>-</td><td>79,372.5</td><td>1</td><td>79,372.5</td><td rowspan="3">제2종
일반
주거
지역</td></tr>
<tr><td rowspan="2">B-4</td><td rowspan="2">-</td><td rowspan="2">59,903.4</td><td>1</td><td>34,252.6</td></tr>
<tr><td>2</td><td>25,650.8</td></tr>
<tr><td>B-5</td><td>-</td><td>26,535.5</td><td>1</td><td>26,535.5</td><td rowspan="4">제3종
일반
주거
지역</td></tr>
<tr><td>B-6</td><td>-</td><td>55,901.2</td><td>1</td><td>55,901.2</td></tr>
<tr><td rowspan="2">B-8</td><td rowspan="2">-</td><td rowspan="2">89,567.6</td><td>1</td><td>48,917.3</td></tr>
<tr><td>2</td><td>40,650.3</td></tr>
</table>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1,002.8	18필지	11,002.8	
근생1	-	1,521.5	1	485.8	
			2	534.3	
			3	501.4	
근생2	-	1,442.0	1	494.5	
			2	493.0	
			3	454.5	
근생3	-	2,062.2	1	492.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2	523.9	
			3	523.8	
			4	522.3	
근생4	-	1,837.8	1	527.3	
			2	480.9	
			3	465.0	
			4	364.6	
근생9	-	4,139.3	1	1,010.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단, 근생10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2	1,071.8	
			3	1,064.3	
			4	992.9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

1)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6,950.9	42필지	56,950.9	
상1	-	8,255.9	1	1,899.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1, 2획지), 상5, 상6은 공동개발 권장
			2	1,724.7	
			3	1,724.1	
			4	1,514.5	
			5	697.0	
			6	696.5	
상2	-	2,156.7	1	2,156.7	
상3	-	4,539.5	1	749.2	
			2	756.1	
			3	1,517.0	
			4	1,517.2	
상4	-	3,549.7	1	1,268.0	
			2	507.6	
			3	508.3	
			4	1,265.8	
상5	-	4,861.4	1	2,014.0	
			2	2,847.4	
상6	-	7,832.8	1	4,138.7	
			2	2,486.0	
			3	1,208.1	
상7	-	1,688.4	1	844.2	
			2	844.2	
상8	-	5,097.1	1	1,267.0	
			2	1,266.4	
			3	1,265.1	
			4	649.1	
			5	649.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9	-	4,236.3	1	706.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0, 상12(3, 4획지)는 공동개발 권장
			2	708.8	
			3	1,412.8	
			4	1,408.6	
상10	-	3,045.6	1	1,526.3	
			2	1,519.3	
상11	-	6,190.4	1	777.2	
			2	772.8	
			3	1,546.3	
			4	1,547.4	
			5	1,546.7	
상12	-	5,497.1	1	1,375.3	
			2	1,373.9	
			3	1,373.8	
			4	1,374.1	

2) 특화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5,157.0	31필지	35,157.0	
특상1	-	6,290.9	1	1,231.8	
			2	1,277.6	
			3	1,269.1	
			4	1,244.3	
			5	1,268.1	
특상2	-	4,248.9	1	1,091.9	
			2	1,050.5	
			3	1,037.1	
			4	1,069.4	
특상3	-	2,344.7	1	1,189.9	
			2	1,154.8	
특상4	-	3,765.7	1	1,318.4	
			2	1,284.4	
			3	1,162.9	
특상5	-	7,624.8	1	1,025.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1,007.4	
			3	1,038.5	
			4	1,078.6	
			5	1,118.5	
			6	1,158.7	
			7	1,198.0	
특상6	-	3,453.6	1	1,197.6	
			2	1,150.7	
			3	1,105.3	
특상7	-	7,428.4	1	1,030.1	
			2	1,020.7	
			3	1,021.3	
			4	1,034.0	
			5	1,110.5	
			6	1,165.0	
			7	1,046.8	

3) 업무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319,032.4	68필지	319,032.4	
		변경	319,032.4	69필지	319,032.4	
업1	-	113,042.8		1	87,705.9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5,336.9	
업2	-	기정	28,855.6	1	28,855.6	
		변경	28,855.6	1	10,000.0	
				2	18,855.6	
업3	-	4,431.4		1	2,230.6	
				2	2,200.8	
업4	-	5,742.5		1	2,352.5	
				2	3,390.0	
업5	-	24,560.4		1	11,692.0	
				2	6,810.6	
				3	2,878.4	
				4	3,179.4	
업6	-	5,252.3		1	2,651.7	
				2	2,600.6	
업7	-	13,188.0		1	3,037.9	
				2	3,069.5	
				3	4,294.4	
				4	2,786.2	
업8	-	10,876.1		1	4,158.2	
				2	4,048.7	
				3	1,337.1	
				4	1,33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9	-	9,978.3	1	4,005.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3,748.9	
			3	1,099.7	
			4	1,123.9	
업10	-	5,780.7	1	1,175.3	
			2	1,108.3	
			3	3,497.1	
업11	-	5,929.8	1	1,152.9	
			2	1,126.7	
			3	3,650.2	
업12	-	6,543.9	1	2,163.2	
			2	2,202.8	
			3	2,177.9	
업13	-	12,494.7	1	12,494.7	
업14	-	13,465.0	1	6,727.5	
			2	6,737.5	
업15	-	12,418.2	1	2,274.5	
			2	2,000.2	
			3	3,518.9	
			4	2,332.3	
			5	2,292.3	
업16	-	12,599.1	1	3,285.2	
			2	4,611.7	
			3	2,369.9	
			4	2,33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17	-	3,182.5	1	784.6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792.9	
			3	793.4	
			4	811.6	
업18	-	3,180.5	1	815.2	
			2	793.7	
			3	792.6	
			4	779.0	
업19	-	6,025.1	1	2,948.3	
			2	1,542.5	
			3	1,534.3	
업20	-	7,698.2	1	2,706.2	
			2	2,385.8	
			3	1,285.0	
			4	1,321.2	
업21	-	2,712.8	1	2,712.8	
업22	-	2,589.2	1	1,286.8	
			2	1,302.4	
업23	-	5,435.6	1	2,724.8	
			2	2,710.8	
업24	-	3,049.7	1	1,513.7	
			2	1,536.0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교육시설

가) 유치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271.5	2필지	3,271.5	
유1	-	1,345.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01	1,345.5	
유9	-	1,926.0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9	1,926.0	

나) 초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9,748.0	1필지	19,748.0	
초1	-	19,748.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9	19,748.0	

다) 고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21,110.5	1필지	21,110.5	
고1	-	21,110.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5	21,110.5	

2) 문화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42,646.1	2필지	42,646.1	
문2	-	20,249.3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9	20,249.3	
문3	-	22,396.8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8	22,396.8	

3)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2,553.5	10필지	22,553.5	
주1	-	2,540.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4	2,540.8	
주2	-	2,171.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51	2,171.8	
주3	-	2,000.6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7	2,000.6	
주4	-	2,868.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8	2,868.6	
주5	-	1,396.7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77	1,396.7	
주6	-	3,248.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3,248.5	
주7	-	2,396.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25	2,396.4	
주13	-	1,947.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65	1,947.4	
주14	-	1,876.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6	1,876.1	
주15	-	2,106.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6	2,106.6	

4) 주유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17.8	1필지	2,317.8	
주유1	-	2,317.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89	2,317.8	

5)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537.9	1필지	2,537.9	
오1	-	2,537.9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90	2,537.9	

6) 전기공급설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4.0	1필지	144.0	
전1	-	144.0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6	144.0	케이블헤드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기타 용도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외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는 허용) -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 •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높이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한옥주택의 경우,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 • 담장, 대문, 계단 -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한옥 주택의 경우 한국전통디자인을 포함하는 담장으로 조성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 도청사 주변의 단독주택 용지는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교통처리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 - 차량 진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관련 시 · 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 · 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 · 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7">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td><td rowspan="7">B1~B6,
B8</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단,B1-1-4에 한함]</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rowspan="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r>
<tr><td colspan="2">높 이</td></tr>
<tr><td colspan="2">주택규모
및
세대수</td><td>•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별표 3-나-2>를 따른다.
•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직각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4항’ 의 지침을 따른다.

• “층수제한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5항’ 의 지침을 따른다.

• “포인트주거동 배치”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0조 제6항’ 의 지침을 따른다.

• “통경구간”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제1항’ 의 지침을 따른다.

• “차경축” 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 제2항’ 의 지침을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td></tr>
</tabl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이하 '건축물의 길이' 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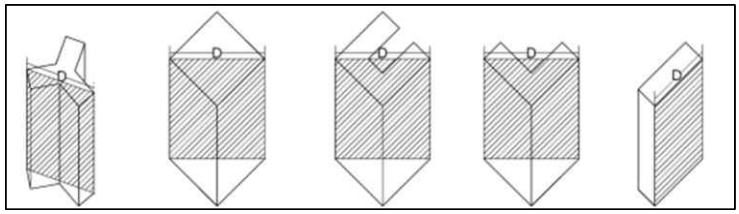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주거동 길이제한> <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 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따른다.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 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대지내 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 공공보행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어귀마당”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2조 제5항’ 의 지침을 따른다.
		교통체계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 · 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교통체계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 주차장 설치비율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네트워크	• "차경축"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필지 번호	구분	획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기정			548,550.5	9,803					
A-1	기정	1	60㎡이하	22,279.9	499	82	18	40	190	임대 (최고층수)
B-1	기정	1	60㎡~85㎡이하	38,905.1	76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주택)
B-2	기정	1	60㎡~85㎡이하	46,020.2	78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2,427.5	719	112	18	40	190	
B-3	기정	1	60㎡~85㎡이하	79,372.5	1,133	112	15	40	160	
B-4	기정	1	60㎡~85㎡이하	34,252.6	489	112	15	40	160	
		2	60㎡~85㎡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B-5	기정	1	60㎡~85㎡이하	26,535.5	450	112	18	40	190	
B-6	기정	1	60㎡~85㎡이하	55,901.2	1,098	112	22	40	220	
B-7	기정	1	60㎡~85㎡이하	44,405.4	873	112	22	40	220	임대
B-8	기정	1	60㎡~85㎡이하	48,917.3	83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th></tr>
<tr><td rowspan="8">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td><td rowspan="8">근생1~4,
근생9</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td><t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60% 이하</td><td>• 6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200% 이하</td><td>• 200%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높 이</td><td>•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 : 20m 이하)</td><td>•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td></tr>
<tr><td colspan="2">• 1층의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td></tr>
<tr><td colspan="2">해당블록</td><td>• 근생 1~8</td><td>• 근생 9</td></tr>
</tabl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근생11~13)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고려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체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특수성이 있는 포장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 차량 진·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2">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td><td rowspan="12">상1~12</td><td rowspan="10">용도</td><td rowspan="9">허용</td><td colspan="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해당블록</td><td>• 상1~4, 상7~12</td><td>• 상5~6</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80% 이하</td><td>• 8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700% 이하</td><td>• 700%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높 이</td><td>•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td><td>•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td></tr>
<tr><td colspan="2">• 최저층수 3층 이상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td></tr>
<tr><td rowspan="12">특화상업
시설

(근린상업
지역)</td><td rowspan="12">특상1~
특상7</td><td rowspan="9">용도</td><td rowspan="8">허용</td><td colspan="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권장</td><td colspan="2">•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colspan="2">• 300% 이하</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2">•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td></tr>
</tabl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기정)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변경) 업2-2,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업무시설
		해당블록		• 업2-2,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기 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업2-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기정)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변경) 업1, 업2-1, 업4-2, 업5, 업13, 업15-1~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여성발전기본법」 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기관의 업무시설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공공업무시설
			기타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해당블록		• (기정)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 (변경) 업1, 업2-1, 업4-2, 업5, 업13, 업15-1~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 특상7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형태 및 외관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특상7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 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유1, 9	용도	허용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기타	• 보육시설 및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4층 이하
학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초1 고1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높 이		•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학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유1, 9 / 초1, 고1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2) 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일반 상업지역)	문2~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8층 이하(최고높이 : 40m이하)

3) 주차장용지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3">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td><td rowspan="13">주1~7,
주13~15</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td></tr>
<tr><td>불허</td><td colspan="2">•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해당블록</td><td>• 주 6~7
(일반상업지역)</td><td>• 주 5
(제2종일반주거지역)</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d>• 6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400% 이하</td><td>• 180% 이하</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6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td><td>•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td></tr>
<tr><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td></tr>
<tr><td>불허</td><td colspan="2">•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td></tr>
<tr><td colspan="2">해당블록</td><td>• 주 1~4
(준주거지역)</td><td>• 주 13~15
(근린상업지역)</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70% 이하</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300% 이하</td><td>• 250% 이하</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
(최고높이:23m이하)</td><td>•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19m이하)</td></tr>
</tabl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배치 및 건축선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4) 주유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지 지역)	주유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5) 기타시설용지

가)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펌프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오1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나) 전기공급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공급시설 (자연녹지 지역)	전기1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 출입구	• “단지 내 보행출입구” 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 “보행자우선구조” 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